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7. 3. 6.

운영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발의일자 : 2017년 2월 22일
- 나. 발 의 자 : 고기관 의원 외 8명
- 다. 회부일자 : 2017년 2월 22일
- 라. 상정일자 :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 
제1차 운영위원회(2017.3.2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고기관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,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 제한하는 조항 신설(안 제5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이 기소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동안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토록 한, 현재의 조례 규정은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미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8곳<sup>1)</sup>의 지방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·시행중에 있는 바, 우리구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, 해당 의원에 대해서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자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,
-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은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에 따라 월정수당은 의원신분을 유지하는 한 지급되는 급여의 개념이고,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실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실비 보전의 성격으로써,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.
- 따라서,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된 이후 의원신분을 유지한 채,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구금상태에 있는 동안, 의정활동비 등 실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은 사회통념상 “무노동 무임금”의 원칙과 “무죄 추정”의 원칙이 상충될 수 있지만, 안 제5조 단서 규정에 의거, 무죄 확정 판결 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법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,
- 또한, 의회입법의 자율권 범위 내에서 급변하는 사회현실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의원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1) 구금 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: 서울시의회, 송파구의회, 관악구의회, 중구의회,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,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, 원주시의회, 서산시의회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고기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17년 2월 일

발 의 자 : 고기관 의원 외 8 명

## 1. 제안이유

현행 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으나,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 제한하는 조항 신설(안 제5조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제6조로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다만,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<생략>	제6조<현행 제5조와 같음>
<신설>	<p><u>제5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 의원</u> <u>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</u> <u>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</u> <u>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</u> <u>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<u>다만,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</u> <u>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</u> <u>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</u> <u>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</u></p>